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7.

運 營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45호로 2021년 12월 16일 정선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의 직인을 조례에 신설하여 인사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등포구의회 공인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추가(안 제2조,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우리 의회에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을 제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공인 등록 등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항에서 영등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로 청인(영등포구의회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과 직인(의장, 상임위원장, 사무국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으로 구분하고, 직인에 인사위원장을 추가하고,
- 안 별표 중 직인란에 인사위원장인을 추가하였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